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1 / 10

□ 목 차 □				
1. 적용범위 2. 목 적 3. 용어의 정의 4. 책임과 권한 5.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6. 환경측면 등록·결과활용 7. 기록 관리 8. 관련 문서				
0	2023.08.01	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		
구 분	작 성 자	검 토 자		승 인 자
부서명 / 직책	안전환경관리부 주 임	안전환경관리부 부 장		대 표 이 사
성 명	공 도 현	김 병 후		이 수 대
서 명				
일자(년/월/일)	2023/08/01	2023/08/01		2023/08/01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2 / 10

1. 적용 범위

이 규정은 당사의 활동,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한다.

2. 목적

당사의 사업수행과 연계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다.

3. 용어의 정의

3.1. 환경측면

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조직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하며, 중점관리 환경측면이란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3.2. 환경영향

조직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를 말한다.

3.3.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서

새로운 시설/설비, 공정, 자재 등의 설치, 시공이 필요한 경우 검토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, 회사의 전체적인 활동,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한 문서

3.4. 정상상태

회사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이 통상적이고 일상의 작업 계획대로 진행 중인 상태

3.5. 비정상상태

회사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이 통상적인 정상상태를 벗어난 경우로서 시공 오류, 돌관공사, 작업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, 야근 등 작업수행의 변화가 생긴 현상

3.6. 비상사태

화재, 폭발, 풍수해, 천재지변, 유독물·OIL·가스누출 등 법적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배출사고, 시설물 관련사고, 중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업무의 중단 또는 인적·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태

4. 책임과 권한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3 / 10

4.1. 대표이사

- 1) 조직의 환경경영 방침을 규정하고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,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, 기술적, 재정적 자원 제공을 보장
- 2)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의 승인
- 3)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경영검토보고서 승인
- 4) 현장 환경측면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승인

4.2. 본사 주관 부서

- 1) 현장의 중대 영향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다.
- 2) 현장의 중점관리 또는 중대한 환경측면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- 3) 본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시행

4.3. 본사 총무부

- 1) 인허가 등 법 적인 부분은 본사 총무부에서 총괄한다.

4.4. 현장소장(현장대리인)

- 1) 현장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서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중점관리 환경측면에 대한 대책을 승인하고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한다.

4.5. 총무(총무 업무 담당자)

- 1) 현장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시행
- 2) 영향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중점관리 환경측면에 대한 대책, 개선 및 실행

5.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

5.1. 평가 주기

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주기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정기평가	해당부분 추가 평가
본사	1회/3년	- 새로운 환경변화(법규 제개정 및 중대한 환경민원 및 사고)로 인하여 영향평가가 필요할 때 - 업무/ 공정의 신규 도입 및 교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때
현장	착공 후 30일 이내	

5.2. 환경 측면파악 대상 분류

환경측면 파악은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하고 업무/공사 형태 및 세부 공정으로 분류한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4 / 10

다.

구분	업무 / 공사형태	세부업무 / 공정
본사	사무실	사무 / 일상 업무
현장	토목공사 등	- 준설 - 터널 - 케이슨 - 부지조성 등

5.3. 환경측면 검토

현장 총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측면을 검토하여야 한다.

구분	내용	환경측면 예	비고
사회적인 요소	법규/사규 관련성	- 자연적인 요소의 모든 환경측면이 해당된다. 다만, 발생량, 법규제 사항, 개선비용, 이해관계자(지역주민, 고객, 기타), 회사 이미지의 변화, 과거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각 항목에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.	
	기술적 난이성		
	경제성 효과		
	이해관계자 요구		
	회사 이미지 제고		
	과거 사고/문제점 발생		
자연적인 요소	대기오염	- 용접 시 용접 가스, 증장비 매연, 작업 시 분진	
	수질오염	- 폐수, 오수, 각종 장비 기름이 하수관으로 유출	
	토양오염	- 폐유, 페페인트, 각종 장비 오일등이 토양으로 유출	
	폐기물	- 각종 기구 포장재, 기름걸레, 고철, 생활폐기물	
	소음/진동	- 드릴, 절단기, 장비 사용 시 소음	
	생태계 영향	- 벌목, 벌채, 작업 도로 개설	
	보건/위생	- 용접불 연기, 각종 자재 절단 시 쇳가루, 기타	
	자재/자원	- 파악된 모든 환경측면이 해당됨	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5 / 10

5.4.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절차 [본사]

- 1) 본사 주관부서는 환경측면 및 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다.
 - (1) 각 부서의 일상 업무 및 업무와 관련 환경영향 여부
 - (2) 환경영향이 환경에 미치는 정도 및 정량적인 데이터
 - (3) 일상 업무와 환경목표 등의 관련 여부
 - (4) 사고/비상사태 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영향 내용 및 심각도
- 2) 각 부서는 **환경측면영향평가서**에 따라 본사의 환경측면 및 영향을 평가한다.

5.5. 환경측면 및 영향평가 절차 [현장]

- 1) 각 현장 총무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수집한다.
 - (1) 기존 유사 현장의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자료 입수(가능시)
 - (2) 공정의 구분 및 업무 리스트
 - (3) 공정과 관련된 표준공법 또는 시방서
 - (4) 공정과 관련되어 사용할 자재 중 환경 유해 자재류
 - (5) 공정과 관련되어 사용될 중장비류
 - (6) 현장의 부대시설(사무실, 숙소, 창고 등)
 - (7) 환경측면 및 정량적인 데이터 및 현장에 적용되는 환경 법규
- 2) 각 현장의 총무는 **환경측면영향평가서**에 따라 현장의 환경측면 및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3) 각 현장 총무는 **환경측면영향평가**의 결과를 현장소장의 승인을 얻는다.
- 4) 현장소장은 **환경측면영향평가서**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중점 관리 환경측면에 대한 대책을 승인하고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한다.
- 5) 현장소장은 중대한 환경영향이 예측된다면 본사 전담 부서에 보고한다.

5.6. 환경측면 검토

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령[본사/현장]

항목	내용
공사형태 주요업무	공사형태/주요업무 기재
세부공종 세부업무	세부공종/주요업무를 세분하여 기재
발생상태	환경측면이 정상상태, 비정상상태 또는 비상 상태에서 발생하는지 파악
점수합계	항목별로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배점
평가	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기입
중점관리	점수합계 30점 이상이면 중점관리사항
비고	※ 영향평가 결과 중점관리항목이 2개 미만인 경우 상위 우선점수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항목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한다.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6 / 10

5.7. 각 항목별 배점 기준[본사/현장]

1) 발생형태별

발생형태	적용기준
정상상태	- 업무, 공정 및 시설이 정해진 계획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(작동)되고 있는 상태
비정상상태	- 업무, 공정 및 시설의 START-UP, 중지, 시험 운영, 야간작업 등 계획 또는 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태
비상사태	- 화재, 폭발, 풍수해, 천재지변, 유독물·OIL·가스누출 등 법적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배출사고, 시설물 관련사고, 중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업무의 중단 또는 인적·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태

2) 발생시기별

발생시기	적용기준
과거	- 과거에 이미 오염되었거나 설치되었던 것을 지금 처리해야 하는 경우 (기존 구축물의 철거 시 배출물, 쓰레기 매립장 공사의 쓰레기·가스 등)
현재	- 현재의 공정·업무로 인해 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
미래	- 현재는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주지 않지만, 목적 달성 후 없애거나 정리(폐기)해야 하는 경우 (사무실, 창고, 숙소, 식당, FENCE, 가설물 등)

3) 자연적요소별

자연적요소	점수	적용기준	비고
대기오염	1	- 오염물질 배출이 극소량이어서 환경오염이 거의 없음	- 차량·중장비 매연, 비산먼지, 악취, 가스등
	2	- 간헐적으로 배출되나 경미하여 별도의 개선이 불필요함	
	3	- 간헐적으로 배출되나 일부 개선이 요구됨	
	4	- 비교적 심한 오염물질이 상당기간 배출됨	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7 / 10

자연적 요소	점수	적용기준	비고
수질 오염	1	- 수가 극소량이어서 환경오염이 거의 없음	- 폐수(세척제), 오수(화장실, 주 방), 토사유출, 세차 등
	2	- 오·폐수가 방출되나 경미하여 별도의 개선이 불필요함	
	3	- 오·폐수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함	
	4	- 혐오감을 줄 정도의 수질오염이 상당기간 배출됨	
토양 오염	1	- 잠재적인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	- 광물질, 화학/ 유독물, 폐유 등 위험물질
	2	- 바닥 콘크리트 처리, 포장/팔레트 등 토양오염방지시 설이 되어 있어 토양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음	
	3	-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함	
	4	- 비교적 넓은 토양이 직접적으로 오염됨	
폐기물	1	-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나, 대부분 재사용 / 재활용됨	- 일반폐기물 : 폐포장지, 음식 쓰레기 등 - 지정폐기물 : 폐유, 폐 CA, 화 학물질 등
	2	- 일반폐기물이 1회 또는 1주에 0.5t 이하 발생함	
	3	- 일반폐기물이 1회 또는 1주에 1t 미만 발생함	
	4	- 일반폐기물이 1회 또는 1주에 1t 이상 발생하거나, 지 정폐기물이 발생함	
소음 진동	1	- 작업 중 소음·진동이 거의 없음	- 중장비/차량 소 음, 폭약 등
	2	-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강도가 경미하고, 일 시적임	
	3	-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2시간 ~ 4시간 이내 이고, 작업자에게 불쾌감을 줌	
	4	-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4시간 이상이고 이 해관계자에게 불쾌감을 줌 - 폭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이 필요함	
생태계 영향	1	-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	- 동식물 서식지/ 야생자연 훼손 지구온난화, 오 존층, 산성비 등
	2	- 생태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나, 개선할 정도는 아님	
	3	-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	
	4	-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원상복구가 필요함	
보건 위생	1	- 인체에 무해하거나, 영향이 거의 없음	- 유해가스, 유독 물, 화합물약취, 먼지, 소음, 화상 등
	2	- 작업 중에 일부 발생하나, 경미함	
	3	- 공사 기간에 일부 발생하며 경미한 질병/부상을 유발 할 수 있음	
	4	- 혼수상태, 질병 또는 심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 - 공사 기간에 계속 발생함	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8 / 10

자연적 요소	점수	적용기준	비고
자재 자원	1	- 자재, 자원 사용이 극히 적거나, 매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	- CA/전선, PIPE, 철가루 등 - 용수, 전기, 가스, 유류 등 에너지 자원
	2	- 구체적인 사용량이 파악되고, 절감 계획에 따라 관리가 가능함	
	3	- 포괄적으로 사용량이 파악되고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, 절감 계획이 없음	
	4	- 전체 사용량에 대한 파악·관리가 되지 않거나, 구체적인 절감 계획이 없음	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9 / 10

4) 사회적 요소

구분	점수	적용기준	비고
법규/ 사규 관련성	1	- 법규 규제 또는 사규 요구사항과 관련이 없음	- 법규:국제협약 법령, 계약서, 각종 합의서 등
	2	- 법(사)규 요구사항과 간접적으로 약간 관련이 있음	
	3	- 법(사)규에서 포괄적으로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- 향후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음	
	4	- 법(사)규에서 구체적·명시적으로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- 과거 법규위반 사례가 있거나, 법규제 기준을 초과함	
기술적 난이도	1	- 현재 기술 수준(능력)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함	
	2	- 개선하는데 고난도의 기술(능력)이 필요함	
	3	- 비교적 단순한 기술(노력)로 쉽게 개선이 가능함	
	4	- 개선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음	
경제성/ 효과	1	- 개선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, 개선 효과가 매우 적음	
	2	- 개선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개선 효과가 적음	
	3	-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개선 효과가 있음	
	4	- 매우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며, 개선 효과가 큼	
이해관 계자 요구	1	-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는 불만과 관계없음	- 이해관계자 : 정부기관, 단체 지역주민, 고객 임직원, 작업자 등
	2	- 이해관계자의 묵시적인 요구사항임	
	3	-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예상됨	
	4	-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나, 요구 또는 불만 (민원) 발생이 확실시됨	
회사 이미지 제고	1	- 회사 이미지와 관계가 없거나,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	
	2	- 회사 이미지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	
	3	- 회사 이미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	
	4	- 회사 이미지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됨	
과거사 고/문제 점	1	- 사고나 문제발생 소지가 전혀 없음	-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
	2	- 과거 매우 경미한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음	
	3	- 과거 동일·유사한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음	
	4	- 과거 사고나 문제가 수차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고 / 문제발생 소지가 많음	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P-612
		개정일자	2023.08.01
	환경측면영향평가 규정	개정번호	0
		쪽 번호	10 / 10

6. 환경측면 등록·결과 활용

6.1. 등록

- 1) 각 부서 환경담당자는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**환경영향등록부**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.
- 2) 영향평가 결과 중점 관리항목이 2개 미만이면 상위 우선점수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항목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**최소 2개 이상의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한다.**

6.2. 결과 활용

- 1) 본사 주관부서/현장소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**환경목표 수립에 반영**해야 한다.

7. 기록 관리

- 7.1.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(HW-QESHP-751)에 따른다.

기록명	관리부서	양식번호	보존기한
환경측면영향평가서	안전환경관리부	HW-환경-001	3년
환경영향등록부	안전환경관리부	HW-환경-002	3년

8. 관련 문서

- 8.1.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
- 8.2. 목표관리 규정
- 8.3. 환경측면영향평가서 규정
- 8.4. 환경운영관리 규정